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제안된 1793년의 인권선언을 중심으로

정태옥 *

I. 서언

인권은 어느새 인류의 규범질서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48년 국제연합에서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인권은 계속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이다. 프랑스 시민혁명은 다른 시민혁명과 달리 '대'라는 접두어를 붙여 쓰여지곤 한다. 그것은 그만큼 프랑스 혁명의 의의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¹⁾ 프랑스 혁명은 전유럽의 정치지형을 바꾸었고,

*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1) 프랑스 혁명의 중요성은 우선은 유럽 역사의 흐름을 돌려 놓는 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영국의 시민혁명이 단지 영국 내의 혁명이었는데 반해, 프랑스 혁명은 전 유럽의 혁명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혁명에 대항하여 영국 등 전 유럽이 동맹을 맺은 대불동맹에서 잘 드러난다. 프랑스 국민들은 전 유럽에 맞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새시대의 이념과 원리로서 천명하고 싸웠던 것이다. 다른 한편 프랑스 혁명은 현대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까지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또한 영국의 시민혁명과 비교함으로써 잘 알 수 있다. 영국의 시민혁명은 어디까지나 부유한 신홍 시민계층이 주도한 것이었고, 따라서 다수의 민중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수평파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미미한 파생적 사건이었다. 반면에 프랑스 혁명에서는 보통 혁명의

인류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프랑스혁명이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할 때, 혁명기에 채택되어, 혁명의 이념과 강령을 보여준 인권선언의 비중은 다른 인권선언에 비하여 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이라고 하면 다만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만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혁명의 발발과 함께 제정된 것이고, 프랑스 혁명 전체를 지도하였다는 점에서는 그것을 대표적인 인권선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필자로서는 또 하나의 인권선언, 즉 프랑스 혁명 제2기를 상징하는 로베스피에르가 제안하고 국민공회에서 채택된 인권선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이 로베스피에르의 인권선언은 1789년의 인권선언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 차이를 담고 있어, 프랑스혁명의 전개과정의 성격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 마디로 말하여 프랑스 혁명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1789년의 인권선언이 1791년 프랑스 헌법의 기초였다면, 이 로베스피에르가 제안한 1793년의 인권선언은 1793년의 헌법의 기초였다. 다만, 그 헌법은 혁명과 공포정치의 와중에서 시행이 보류되다가, 로베스피에르의 처형과 함께 사장되고 만다. 이러한 사정이 1793년의 인권선언의 역사적 의의에 약간의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사상사의 견지에서 보면 이 인권선언이야말로 이후 인류의 법질서의 원천을 이루는 귀중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인권선언은 서양사학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연구도 충분히 되어 있지만, 우리 법학계에서는 아직 그 인권선언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그리하여 필자는 비록 프랑스 원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감히 1789년의 인권선언과 1793년의 인권선언을 비교해 보고, 1793년의 인권선언의 의의에 대하여 써보기로 한다.

제2기라고 불리우는 보다 민주주의적인 단계가 있었다. 상 월로트라고 불리우는 각성된 도시 서민들이 주축이 된, 이 단계는 보통선거와 사회복지등 현대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헌법으로 만드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혁명의 열정으로 대불동맹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결국 그 헌법은 시행되지 못하고, 혁명의 제2기도 종막을 고하고 말았지만, 그러한 혁명의 민주적 분출은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예정해 놓는 원천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II.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의 역사적 배경

먼저 두 인권선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을 이루는 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밝혀 두기로 한다. 그러한 배경을 통하여 양 인권선언의 지위와 의의가 보다 잘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²⁾

주지하다시피 프랑스혁명은 1789년 제3신분회의 국민의회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루이 16세가 재정의 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3부회를 소집하였는데, 구체제의 폐정은 드디어 시민계급을 격발하여 평민회는 그들이 프랑스 전체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회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새로 운 질서를 위한 헌법제정에 착수하고, 그 명칭은 제헌의회로 바꾼다. 1789년의 인권선언은 구체제의 모순에 대한 시민계급의 자유의 선언이자, 헌법제정작업의 강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1791년 프랑스혁명의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혁명은 결코 순탄치는 않은 것이다. 라파예트가 중심이 된 시민계급은 혁명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지만, 혁명의 1단계는 양쪽에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위에서는 왕을 비롯한 구귀족 그리고 성직자들의 반혁명의 음모와 책동이 점점 구체화되어 갔고, 또 그것이 이웃의 봉건국가들과 연대를 맺는 수준으로 발전되었으며, 아래에서는 농민계급과 도시서민들의 생존권의 요구가 폭동의 수준으로 치달아 갔다. 그 와중에 왕의 탈주사건이 터진다. 루이 16세는 외국의 도움을 얻어 프랑스혁명을 진압하고자 망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이로 인해 민심은 결정적으로 반군주제, 즉 공화제로 기울게 된다. 한편 혁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라파예트를 비롯한 시민계급들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유럽을 상대로 먼저 선전포고를 하지만, 결과는 프랑스의 패배였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반혁명의 반란

2) 이하는 알베르 소부울(최갑수 역), 『프랑스 대혁명사 상·하』, 두레, 1984년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곳곳에서 일어나 프랑스는 온통 혼란과 혁명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생필품의 공급이 원활치 못함은 물론 가격이 폭등하고, 그 틈을 이용하는 매점매석이 횡행하는 등, 민생고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위기위식을 고조시켰고, 혁명의 열기를 애국심과 일치시키는 효과를 놓았다. 그리하여 급기야 프랑스 혁명은 제2단계로 나아간다. 상 웰로트라고 하는 도시서민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은 보다 민주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한 것이 바로 자코뱅 클럽이었으며, 그 클럽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로베스피에르였다. 이제 프랑스는 공화제가 선포되고, 보통선거에 의한 새로운 의회의 소집이 결의되었다. 그리하여 성립된 것이 국민공회이다. 혁명의 제1기를 지도하였던 라파예트는 이와 같은 혁명의 진전에 놀라 오스트리아로 도망가고 만다. 로베스피에르의 국민공회는 왕을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여 처형하고, 가격통제와 매점매석의 금지를 시행하고, 봉건제의 완전폐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내 반혁명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다. 한편 루이 16세의 처형으로 전유럽은 동맹을 맺어 프랑스에 침략해 들어왔다. 프랑스는 그에 맞서 징발과 징집령을 선포한다. 이리하여 역사상 최초의 국민군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군대는 빌미에서 대불동맹에 맞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괴테는 이 전투를 평하여 세계사의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로베스피에르의 인권선언은 그와 같은 혁명의 제2기에 국민공회에 제출되어 승인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1793년의 헌법제정에서 강령의 역할을 하였다.

III. 인권선언의 내용 -1789년의 선언과 1793년의 선언의 비교분석

이제 1789년의 인권선언과 1793년의 인권선언의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주권, 민주주의, 정치적 권리

1789년의 인권선언은 주권은 국민(nation)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동 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도 명백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1793년의 인권선언에서는 인민(peuple)주권이 선언되고 있다. 동 선언 제14조는 "인민은 주권자이다. 정부는 시민의 소산이고, 인민의 소유물이며, 공직자는 인민의 수임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0조에서는 "인민의 어느 일부분도 인민전체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차이³⁾는 구체적으로 우선 정부의 권위와 전 국가적 국민의 자발적인 권리의 구별에서 나타난다. 1789년의 인권선언에서는 국가에 앞서 인민에 주권이 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주권자는 오직 국가기구와 더불어 구성되는 국민인 것이다. 반면에 1793년의 인권선언에서는 인민의 자발적인 정치권력과 정치의사의 형성을 보장한다. 즉 "집단적 주권자인 각 지구회의는 완전히 자유롭게 그의 의지를 표명할 권리를 향유한다. 그는 본질적으로 모든 행정적 권위로부터 독립해 있으며, 그의 정책과 토의의 주인공이다"(제20조 제3문)라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로베스피에르는 전 국가적인 인민의 존재를 규범질서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즉 동 선언 제19조 제2문에서는 "인민은 선량하고 집권자는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론은 다시 대표제에서 중대한 차이를 낸다. 1789년의 인권선언은 제한적인 간접선거, 즉 유신자 중심의 제한적 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에 1793년의 인권선언은 보통선거, 보편적 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1789년의 인권선언은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하거나 또는 그의

3)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비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164면이하 참조.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 제1문)고 말하여 제한적인 간접 민주제의 가능성은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었는데 반하여, 1793년의 인권선언은 제20조에서 "인민의 어느 일부분도 인민전체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표명하는 욕구는 일반의지를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인민의 일부분의 욕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22조에서 "모든 시민은 인민의 수임자의 지명과 법의 제정에 참여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보통선거와 보편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양 인권선언은 이어서 공무담임권에서도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1789년의 인권선언 제6조 제3문에서는 "모든 시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게,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누구나 그 능력(capacité)에 따라 공적인 고위직, 지위, 직무 등에 동등하게 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견 평등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capacité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일의 수행능력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그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 덕성과 재능이 나와 있지 않는가? 이 capacité는 사실 자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 자격이란 법률로 정한 재산에 의한 자격이다. 곧 이어 제정되는 정치적 자격에 관한 법률에서 1789년의 인권선언의 기초자들은 공직 취임의 자격을 소수의 부유한 계급으로 한정하여 놓은 것이었다.

반면에 1793년의 인권선언에서는 그것이 삭제되고, 대신 "인민의 신임"의 규정이 들어갔다. 동 인권선언 제21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덕성과 재능 이외의 아무런 차별없이 그리고 인민의 신임이외의 아무런 자격의 필요 없이 모든 공직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1789년의 인권선언의 민주주의의 제한성은 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자격에 관한 법률(동년 12월 22일)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⁴⁾ 여기서는 시에예즈의 제안에 따라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이 구분되었다. 수동적 시민은 비록 신체, 재산 그리고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지니지만, "공공권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적극적

4) 앞(각주2)의 책(상권), 172면.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3일 이상의 노동량에 해당하는 액수-1.5 내지 3리브르의- 직접세를 납부하는" 정도의 재산을 가져야 하는 데, 이들은 당시 프랑스 성인 남성 전체 약 700만 가운데 반이 조금 넘는 400만명 정도 였다고 한다. 즉 나머지 300만명의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제한성은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거인단의 구성과 피선거권의 제한에서도 나타난다. 적극적 시민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직접 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거인단의 선거인을 선출할 수 있을 뿐이다.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재산상의 조건이 붙는다. 즉 "최소한 10일 이상의 노동량의 액수의 직접세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추세로서 의회의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토지재산을 소유하고, 은화 1마르크(약 52리브르)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가여야 하는 것이었다.

2. 소유권질서

1789년의 인권선언은 제14조에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인권선언은 소유권이외의 여러 자유권들을 선언하고 있는데, '신성불가침'이라는 수식어는 오직 소유권에만 붙여져 있다. 소유권은 특별한 지위를 얻는 것이고, 당시 부유한 시민계급의 재산은 확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공공수용과 같은 규정은 오늘날 국가의 수용의 개념이 아니다. 이는 당시 봉건제의 폐지의 관련한 일종의 농지개혁에서 이른바 유상분배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소유권제한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봉건영주에 지불하였던 물적 부과조는 무상폐기될 수 없고, 이른바 '되사기'에 의하여야 된다는 것이었다.⁵⁾ 사실 봉건제의 폐지의 문제는 프랑스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다. 그리하여 제헌의회에서는 1789년 7월 14일 민중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후 혁명의 구호로써 8월 4일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폐지된 것은 인신적 부과조였다. 즉 영주재판권, 재산상속세, 농노세, 인신세, 부역 및 부역대납세, 시설독점 및 강제사용권, 통행세, 수렵과 어로의 독점권 등은 무상폐기되었으나, 이른바 소작료에 해당하는 물적 부과조는 유상폐기의 원칙이 천명되었던 것이다. 1789년 8월 26일에 선언된 인권선언의 소유권규정에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는 공공수용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물적부과조의 유상 폐기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그 유상폐기의 상환율은 이듬해 정해지게 되었는데, 농민들은 정기세의 20년치, 부정기세의 25년치를 일괄적으로 지불하여야만 토지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는 다수의 농민들에게는 의미가 없었고, 오직 신흥 부르주아의 토지소유 확대의 길을 터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1789년의 인권선언에서 소유권이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절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1793년의 인권선언에서 소유권의 지위는 크게 달라진다. 다른 권리들과 동렬로 내려오고, 또 공익을 위한 제한이 명백히 부과된다. 로베스피에르는 소유권에 대하여 여러 조항을 할애하여 그것의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우선 제6조에서 "소유권은 법에 의하여 각 시민에게 보장된 재산을 각 시민이 향유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유권이 다른 권리를 초월하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한계 내에 있는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7조에서 "소유권은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 를 존중한다는 의무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여, 소유권은 다른 권리보다 우월한 것도,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8조에서 "소유권은 동포의 안전, 자유, 생존 그리고 소유권을 손상시킬 수 없다"라고 하여 소유권의 한계 혹은 소유권에 대한 생존권의 우선성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9조에서 "위의 원리를 범하는 모든 재산과 모든 상행위는 불법이며 부도덕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곧 당시 다수의 서민들의

5) 甲斐道太郎(강금실 역), 《소유권사상의 역사》, 돌베개, 1984, 95면 참조.

요구였던 최고가격제(가격통제)의 시행과 매점매석의 금지 그리고 전쟁을 위한 징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특유의 도덕주의에 입각하여, 구체제의 횡포로부터 해방을 외친 프랑스혁명이, 다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로 생취한 혁명의 성과가, 오히려 부자들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재산과 부가 선량하고 가난한 인민들에 대한 폭력이 되지 않도록 힘쓴 것이다.

3. 자유권 대 사회권

1789년의 인권선언은 오늘날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자유권들에 대하여는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권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와 반대로 1793년의 인권선언은 자유권에 대하여는 미미한 반면에 사회권에 대하여 자세하고 풍부하게 규정하고 있다.

1789년의 인권선언의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신체의 자유, 특히 형사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제7조에서는 형사사법 일반에 대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형벌의 명확성과 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가혹행위의 금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와 제11조는 정신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제10조에는 종교의 자유 제11조에서는 사상, 언론, 저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처럼 1789년의 인권선언이 자유권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1793년의 인권선언은 다만 제5조에서 평화로운 집회와 인쇄물에 의한 의견발표의 자유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다. 대신 동 인권선언은 사회권에 대하여는 풍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제10조는 "사회는 모든 성원에게 일터를 확보하거나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생존수단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권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는 "의식에 곤궁한 자에 대한 불가결의 구호는 잉여 분을 소유한 자의 채무이다. 이채무의 이행방법은 법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하

여 생활보호를 위한 부의 재분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것을 단지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법적 의무, 채무로 써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사회는 전역량을 통하여 공공이성의 진보를 촉진시키고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여 교육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두 인권선언은 기본권규정에 있어서도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1789년의 인권선언이 자유권적 기본권에 치중하고 있다면, 1793년의 인권선언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1793년의 인권선언이 자유권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소유권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1793년의 인권선언이 1789년의 인권선언을 개폐하는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이 기본권규정들에서는 개폐가 아니라 보충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1793년의 인권선언이 자유권 가운데 집회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 데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즉 1789년의 자유권들에 보충하여 집회의 자유와 그리고 1789년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추가로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위의 사항들 이외에도, 저항권 규정이라든지, 누진세규정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언급 등에서도 역시 1793년의 인권선언의 특색, 즉 1789년에 비하여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성격은 잘 나타나지만, 상론은 생략하겠다.

IV.결어

거듭 강조하지만 1793년의 인권선언은 인류의 인권선언의 역사에서 확실히 인정표가 될 만한다. 많은 법학도들은 근대의 인권선언하면 1789년의 선언과 미국의 버어지니아 인권선언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그 두 인권선언은 근대에 새롭게 사회의 주체~~세력~~으로 떠오르는 시민계급의 재산과 자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전 인류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제안된 1793년의 인권선언은 앞의 선언들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혹은 보충하여 보다 풍부하고도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 현대 인권사상과도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혹자는 로베스피에르가 사회주의적 경향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터인데, 로베스피에르는 사유재산의 원칙적 폐기를 뜻하는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로베스피에르는 당시 혁명기에 토지 공유등 공산주의적 주장을 하는 이들에 대한 사형을 명하는 법령을 공포했을 정도로 자본주의적이었다. 또한 로베스피에르는 사실 가격통제나 매점매석의 금지를 정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 사회주의의 비조 격인 당시 급진주의자인 바뵈프는 로베스피에르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강력 비난하였고, 그의 실각에 일조하였다.

이렇듯 로베스피에르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자라고도 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로베스피에르는 '정신주의자'이다.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혁명이 인간혁명, 정신혁명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였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덕(德)의 공화국'의 건설이었다. 구체제의 압제에 시달리면서도 선량한 심성을 잃지 않는 인민들의 덕성이 꽂피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한 프랑스혁명 제2기는 이를테면 '문화(文化)혁명'인 셈이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의 도덕주의는 지나치게 엄격한 바 있었다. 그의 엄격성은 혁명이 승리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공포정치'가 확대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릇 정신주의와 도덕주의는 자칫 대중들에 대한 가혹한 통제 혹은 억압으로 변질되기 쉬운 법이다. 결국 대중은 로베스피에르를 저버렸고, 혁명은 다시 시민계급이 장악하게 되었다. 로베스피에르의 인권선언과 그에 기초한 1793년의 헌법은 사장되어 버렸으며, 로베스피에르가 추구한 인권의 정신과 인민의 덕성은 암마적 독재와 공포의 단두대라는 이미지에 암도되어 버렸다. 공포정치기의 무분별한 처형 등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책임은 부인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로베스피에르에 덧씌여진 여러 오명과 가혹한 비난은 다분히 그에 의하여 억압당하였던 시민계급이 그 후 역사의 주체가 되면서 과장되어 기술된 면이 없지 않다. 오늘날 로베스피에르는 그의 공포정치의 책임

에도 불구하고, 그 엄격한 도덕성과 혁명정신에서 이미 복권되었다.⁶⁾ 이제 인권의 역사에서도 그의 인권선언에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부록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Robespierre에 의하여 提案된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⁷⁾)

國民公會에 모인 프랑스人民의 代表者들은 正義와 理性의 永遠한 法에 由來 하지 않는 인간의 法은 人間性에 대한 無知와 專制主義의 犯罪에 지나지 않음을 認知하고, 인간의 自然權의 忘却과 蔑視가 世界의 犯罪와 不幸의 唯一한 源泉임을 確信하고, 모든 市民이 政府의 行爲를 모든 社會制度의 목적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專制政治에 의하여 抑壓되거나 品位를 損傷당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人民은 그의 自由와 幸福의 基礎를, 執權者는 그의 義務의 규정을, 正法者는 그의 使命의 目標를 언제나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엄숙한 宣言을 통하여 人間의 성스럽고 不可讓渡의 諸權利를 提示할 것을 決議하였다.

이에 따라 國民公會는 全世界에 대하여, 그리고 不滅의 立法者의 監視下에 다음과 같은 人間과 市民의 權利에 관한 宣言을 宣布한다.

第1條 모든 政治的 結合의 목적은 人間의 영원한 自然權의 維持와 人間의 모든 能力의 發展에 있다.

第2條 人間의 주요權利는 人間의 生存과 自由의 保存을 可能케 하는 權利이다.

第3條 이러한 權利는 肉體的 힘과 道德的 힘의 差異를 超越하여 모든 人間에게 平等하게 歸屬한다. 權利의 平等은 自然에 의하여 設定된 것이다. 社會는 이를 損傷함이 없이 오히려 이를 架空의인 것으로 만드는 權力의 濫用에 대하여 이를 保障할 따름이다.

6) 우리나라에서도 민석홍교수가 일찍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종합적인 재조명을 한 바 있다. [Maximilien Robespierre의 정치사상 연구], 《서양근대사연구》, 1975(1995 중판), 일조각, 212-317면)

7) 위의 책, 234-237면.

第4條 自由는 人間이 마음대로 그의 모든 資質을 行使할 수 있는 能力を 말한다. 自由는 正義를 그 規制로, 他人의 自由를 그 限界로, 自然을 그 原理로 그리고 法을 保護者로 삼는다.

第5條 평화로운 集會의 權利와 印刷物에 의한 또는 기타 方法에 의한 意見發表의 權利는 人間의 自由의 原理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必要性이란 최근의 專制主義의 尚存 또는 殘滓를 뜻한다.

第6條 所有權은 法에 의하여 각 市民에게 保障된 財產을 각 市民이 享有하고 處分하는 權利를 말한다.

第7條 所有權은 다른 모든 權利와 마찬가지로 他人의 權利를 존중한다는 義務에 의하여 制限된다.

第8條 所有權은 同胞의 安全 · 自由 · 生存 그리고 所有權을 損傷시킬 수 없다.

第9條 이 原理를 犯하는 모든 財產과 모든 商行爲는 不法이며 不道德이다.

第10條 社會는 모든 成員에게 일터를 確保하거나 勞動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生存手段 保障함으로써 生活資料를 제공할 義務를 가진다.

第11條 衣食에 困窮한 자에 대한 不可缺의 救護는 剩餘分을 所有한 자의 債務이다. 이 債務의 履行方法은 法에 의하여 定한다.

第12條 그의 收入이 生活의 必要를 超過하지 않는 市民은 公共費用에 대한 納稅를 免除받는다. 기타 市民은 그의 財產의 多少에 따라 累進的으로 公共費用을 負擔한다.

第13條 社會는 全力量을 다하여 公共理性의 進步를 促進시키고 모든 市民이 教育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第14條 人民은 主權者이다. 政府는 市民의 所產이고 人民의 所有物이며 公職者는 人民의 受任者다.

第15條 法은 人民의 意志의 자유롭고 嚴肅한 表現이다.

第16條 法은 萬人에게 平等하다.

第17條 法은 社會에 有害로운 것만을 禁 할 수 있으며 社會에 有益한 것은 禁止할 수 없다.

第18條 人權의 영원의 權利를 侵害하는 法은 본질적으로 不當하고 專制의이며

그것은 法이 아니다.

第19條 모든 자유로운 國家에서는 法은 특히 統治者의 權威의 濫用으로부터 公共의 自由와 個人의 自由를 守護해야 한다. 人民은 善良하고 執權者는 腐敗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制度는 邪惡한 것이다.

第20條 人民의 어느一部分도 人民全體의 權力を 行使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表明하는 欲求는 一般意志를 形성하는 데 參與하는 人民의一部分의 欲求로서 尊重되어야 한다. 集團的 主權者인 각 地區會議는 완전히 자유롭게 그의 意志를 표명할 權利를 享有한다. 그는 본질적으로 모든 行政的 權威로부터 獨立해 있으며 그의 政策과 討議의 主人公이다.

第21條 모든 市民은 德과 才能 이외의 아무런 差別없이 그리고 人民의 信任이외의 아무런 資格의 必要없이 모든 公職을 누릴 수 있다.

第22條 모든 市民은 人民의 受任者の 指名과 法의 제정에 參與할 平等한 權利를 가진다.

第23條 이 權利가 空虛한 것이 되지 않고 平等이 幻想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社會는 公職者에 奉給을 주어야 하며 勞動으로 生活하는 市民이 그들의 生存이나 그의 家族의 生存의 威脅을 받지 않고 法에 의하여 要請된 公的 會合에 參與할 수 있게 해야 한다.

第24條 모든 市民은 政府의 要職者와 官吏가 法의 代行者거나 執行者인 경우 그들에게 順從해야 한다.

第25條 人間의 自由, 安全 또는 所有權을 侵害하는 모든 行爲는 누구에게 의하여 행하여지든, 그리고 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고 法이 定한 形式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恣意的이고 따라서 無效果. 法의 존중 그 자체가 이에 복종할 것을 禁止하며 만일 暴力으로 이를 敢行하려는 경우 이를 힘으로 拒否할 수가 있다.

第26條 모든 個人은 公共機關에 陳情을 제출할 權利를 가진다. 陳情을 받은 公共機關은 陳情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決定을 내려야 하며 陳情權의 行使를 禁止, 抑制 또는 非難할 수 없다.

第27條 壓制에 대한 反抗은 人間과 市民의 다른 諸權利의 歸結이다.

第28條 社會成員의 단 한 사람이 抑壓된 경우라고 그것은 社會 전체에 대한 壓制이다. 社會集團에 대한 壓制는 社會集團의 構成員 個個人에 대한 壓制이다.

第29條 政府가 人民의 權利를 侵害하는 경우 叛亂은 人民과 人民의 각 部分에 게 있어 가장 성스러운 權利인 同時에 가장 必要한 義務이다.

第30條 한 市民에게 社會保障이 缺如되는 경우 스스로 自己의 모든 權利를 守護함은 自然權에 속한다.

第31條 어떠한 경우이든 壓制에 대한 抵抗을 法의 形式에 強制的으로 從屬시킴은 專制政治의 마지막 奸計다.

第32條 官職은 殊勳이나 報償으로 看做될 수 없으며 公共의 義務로 看做되어야 한다.

第33條 人民의 受任者の違法行爲는 嚴格하게, 그리고 迅速하게 處罰되어야 한다. 아무도 다른 市民보다 不可侵의 존재임을 自處할 權利를 가지지 않는다.

第34條 人民은 그의 受任者の 모든 활동을 알 權利가 있다. 따라서 受任者は 市民에게 그들의 行爲에 관하여 忠實한 報告를 하고 市民의 判定에 敬意를 가지고 따라야 한다.

第35條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兄弟이며 서로 相違한 人民들은 한 國家內의 市民들처럼 그들의 能力에 따라 相互協助해야 한다.

第36條 한 國民을 抑壓하는 者는 모든 國民들의 敵으로 看做한다.

第37條 自由의 進歩를 停止시키고 人權을 消滅시키기 위하여 한 人民에게 武力攻擊을 加하는 者는 모든 國民에 의하여 일반적인 敵이 아니라 叛逆의인 殺人者와 匪賊으로 紛彈을 받아야 한다.

第38條 國王과 貴族과 暴君들은 그들이 어떻든 간에 地上의 主權者인 人類와 世界의 立法者인 自然에 反抗하는 奴隸다.